

1993년 7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
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4. 광주과학기술원법안
5.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7.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8.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9. 우편환법 개정법률안
10.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11.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3.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14.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15.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부의된 안건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 ..... 2
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 ..... 3
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제출) ..... 4
4. 광주과학기술원법안(정부 제출) ..... 5
5.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6.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7.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8.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9.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10.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1.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3.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14.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정부 제출) ..... 20
  - o 의사진행의 건 ..... 25
15.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 29
- \* 미합중국대통령(빌 클린턴) 연설 ..... 35

(17시04분 개의)

○의장 이만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강천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만섭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태식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3항에 의해서 이 요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조3항에 의하면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금 잠깐 동안이라도 여야 교섭단체대표들과 의장실에서 협의를 정식으로 갖고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비공식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으로 잠깐 정식으로 협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잠깐만……

이번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총무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식 의원 외 101인이 낸 조사요구서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리기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의원들께서 너무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시고 이래서 죄송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국회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가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최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여러 의원들에게 회답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 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

(17시18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항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을 상정을 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헌기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본인을 포함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의 위원 6인이 이미 공포된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그리고 대법원 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진지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을 지난 7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은 그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둘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나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에 의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 기타 관계인이 2회 이상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하고

넷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 등 국회 소속 공직자 4인,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5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만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신고서는 임명동의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선출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직접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재산신고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고 당해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그리고 국회규칙이 제정됨에 맞추어 국회의원과 등록대상인 국회 소속 공무원은 8월 1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며 재산공개는 9월 11일까지 하고 공개된 재산에 대한 심사는 12월 1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재산등록 관련 각종 서식은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각종 관련서식은 안내서와 함께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

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섭 그러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국회 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  
(17시24분)

○의장 이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의원 운영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선거나 지역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과도한 정치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선거구 내의 각종 조정사 및 지역구 행사에 화환이나 화분의 기증 또는 과도한 경조금의 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자구적 장치를 국회규칙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 자정노력이 각 지방의회와 지역구민의 의식변화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선도적 의지를 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규칙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여야 총무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6인의 소위원이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진지한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것을 지난 7월 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지 아니하고

둘째,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예의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지 아니하며

셋째,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성격의 인사장을 제외하고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섯째,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는 동시에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화환이나 화분을 안 보내기로 한 것은 의원의 지역구 내에서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으로서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 자체를 훼손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회 내의 사무실과 의원실 및 각 가정에서는 항시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등 꽃의 문화를 더욱 승화시키고 주변환경을 밝게 함으로써 이러한 꽃의 문화가 일반시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언론과 국민에의 홍보 등을 위한 그 후속조치를 국회의장에게 건의하고 이러한 우리 국회의 의지가 지방의회에까지 확산되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통지하며 또한 각종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할 때 규칙안의 입법취지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직후보자 등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심의위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설문 결과를 배부해 드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제출)

(17시29분)

○의장 이만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석재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19일 이원형 의원 외 89인이 발의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3년 7월 3일 정부가 제출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동년 5월 20일과 7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7월 7일 제162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민주당 소속 이원형 의원과 정부 측으로부터 각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5월 7일과 5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두 법률안은 그 입법취지가 동일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형의 실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단일안으로서 위원회 대안을 성안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각 조항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대안으로 작성해서 7월 9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건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자료표의 보존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사자료표 내용을 회보함에 있어서

는 그 용도, 작성자 및 조회자의 성명, 작성일시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수사자료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효기간을 형기에 따라 구분하여 형기 3년 초과인 경우는 현행 기간 10년을 유지하고 형기 3년 이하인 경우는 5년으로 단축하며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구류 과료형의 실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집행종료 또는 면제 시로 각각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2개 이상의 형이 병과된 경우의 실효에 관하여 그 기산점 및 기간을 명백히 규정하고

넷째,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수형인명부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사자료표의 회보제한규정에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의 수사자료표의 내용에 대한 누설방지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사자료표의 불법회보뿐만 아니라 누설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벌칙을 현행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기록의 용도 외 취득제한규정과 용도 외 사용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대안은 수사자료표 및 수형인명부 등 전과관련제도의 관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과기록의 외부누설을 적극 방지하고 형의 당연 실효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수형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보다 진취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법안(정부 제출)

(17시34분)

○의장 이만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과학기술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규 의원 경제과학위원회 소속 조홍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광주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사업은 13대 14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1992년 3월 광주과학기술원설립추진단이 구성되고 그해 12월에 건설공사를 착수한 사업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되는 광주기술원은 1995년 개교를 목표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2000년대를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개발과 고급과학기술인재 확보가 절실한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교육연구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과학기술원의 건설 연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광주과학기술원에 박사 및 석사과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도록 과학기술처장관이 광주과학기술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넷째, 광주과학기술원에 연구시설을 기증한 자는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로 국내는 물론 세계 굴지의 대학원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7월 10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일 개최된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8조제1항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에서 학과를 법정화한 것을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에서 원장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학교명칭에 관하여 ‘광주’라는 협의의 의미보다 전국적 차원의 의미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전 국가적 첨단 과학기술원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 그리고 학사과정 설치에 관하여는 저희 위원회와 동 법안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부터 앞으로 정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운용상황을 보아 학사과정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경제과학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광주과학기술원법안 심사보고서(경제과학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광주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38분)

○의장 이만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김말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말용 의원 노동위원회 김말용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6월 7일부터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재심사청구의 사건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의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며 회의의 종류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심사청구사건은 7인 회의가 이를 취급하도록 하되 7인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 종전의 재결과 다른 경우 등에는 전원회의에서 이를 취급하도록 하고

셋째, 7인 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원회의는 위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8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93년 7월 8일 제2차 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바 그 결과를 7월 12일

제3차 노동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후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2조제2항에서 '7인 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전원회의는 위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8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위원회의 회의정족수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의결방식의 비탄력성으로 위원회 운영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경직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재심사청구사건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의결정족수의 신속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다만 위원회 회의에는 반드시 법률 및 의료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출석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17조의2 후단의 중복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동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임금액 상승률이 해당 연도에 행하여지는 임금교섭에 선행지표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이후 단체교섭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이중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하는 등으로 노사 간 분쟁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둘째,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일반노동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대효과와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며

셋째, 최저임금 적용시기의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결정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93년 7월 8일 제2차 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바 그 결과를 7월 12일 제3차 노동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후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제2항에서와 같이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 고령근로자 일반의 임금수준 인하 우려,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미흡하여 개정안의 관련조항을 삭제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노동위원회)
-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노동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

**○의장 이만섭**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48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7항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우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삭도·궤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용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삭도 및 궤도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제명을 ‘삭도·궤도사업법’에서 ‘삭도·궤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과거에는 면허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삭도 또는 궤도사업의 운임 요금 운전속도 및 영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와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삭도 및 궤도시설의 공사시행인가 준공검사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섯째,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종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삭도 및 궤도에 관한 전문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도경영자와 화주의 사이에서 화물의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

규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종전에는 철도소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소운송업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종전에는 철도소운송업자가 영업규칙의 제정 변경이나 소운송업의 양도·양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철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소운송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2건의 법안을 1992년 7월 7일 제16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3년 7월 9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삭도 및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정기검사최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삭도 등에 대하여 안전검사명령과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삭도 및 궤도의 안전검사는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안전검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철도소운송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영업수지 악화가 우려되며 인가제인 영업규칙 제정·변경 등이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영업규칙이 제정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시행법규를 개정하거나 행정지침 등을 보완하여 해결토록 촉구하고 정부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교통  
체신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먼저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  
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는 여러 의원들께서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56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9항 우편환법 개정법  
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  
다.

지금부터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  
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편환업무  
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우편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환을  
잃어버리는 등의 경우에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  
한 사전절차로서 요구되는 재교부절차를 폐지하  
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우편환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우편환의 1매당 한도  
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체신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둘째, 종전에는 우편환의 지급을 위하여 지정

받은 체신국에서만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던  
것을 우편환업무가 온라인화됨에 따라 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전국의 모든 우  
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우편환의 수취인 등이 우편환증서를 잃  
어버린 경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우편환의 지급청구를 위하여 우편환  
증서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업무처  
리의 간소화와 수취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  
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수취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  
하여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증서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던  
것을 우편환증서의 재교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3년  
7월 7일 연 162회 임시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하여 법안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의 심사과정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7월 9일 제3차 위  
원회에서 개정안이 우편환을 수취인이 원하는 전  
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편환증서를 분실한 경우 등에도 증서의 재교부  
없이 우체국의 사실 확인만으로 현금지급이 가능  
하게 하는 등 이용 국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의 일시부족으로 인한 우편환의 지  
급지일이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개정안 제14조의 규  
정은 기간의 제한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규정이나 우편환  
이용 국민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규정이므로 현금  
의 일시부족으로 우편환의 현금지급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  
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우편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교통체신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그러면 우편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02분)

**○의장 이만섭**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3항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이공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규 의원** 건설위원회 이공규 의원입니다.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다국적기업화에 대한 대책과 국내건설업체

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 우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거 보전 위주의 용도지역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토이용계획체도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토지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의 분류 중 용어정립문제, 인근지역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부동산투기대책, 토지이용규제완화로 야기될 농지·산지의 전용과 환경훼손·환경오염방지대책,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범위설정문제 그리고 유희지의 사후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 학계 및 언론계 등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의 하나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이 공업단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성된 공업단지에의 입주에 있어서 규제완화방안과 집중화된 공업단지의 조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 학계 및 언론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정부 원

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동년 7월 8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7월 12일 제162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원용지의 소유자 등 민간도 도시공원을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 중 체육공원의 정의 정립, 이 법률시행령에서 정할 운동시설의 범위 중에서 간이골프장 배제, 도시공원의 무상귀속예외규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적용 여부 그리고 녹지 내 건축물 등의 설치허가 시 보상비 과다 여부 등에 대하여 신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녹지시설 내의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기존 건축물·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을 조기에 허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려는 것을 3개월로 수정하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홍보와 공청회·학계 및 언론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이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4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건설위원회)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먼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토의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서신 민주당의 오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탄 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탄 의원입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정부가 과연 역사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한가 하는 명제를 상기하면서 본건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경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제시하고 또 이러한 점들이 제도와 법에 반영되어 나타날 때 국민적인 공감대와 총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본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는 생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은 경제논리까지도 군사적 개념의 통치로 이해하면서 모든 법과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재벌이 경제를 주도할 수 밖에 없었고 정권과 유착되지 아니한 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토양마저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희생물로 전락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경유착인데 정경유착의 차단이 없이는 신정부의 경제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권력의지와 이해관계에만 따른 성장개발정책은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논리로 정체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퇴행을 가져와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갈등구조의 타파야말로 신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에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 국민들은 땀 흘려 일한 과실을 향유하지 못한 채 분배로부터 소외당해 왔습니다. 신정부가 복지국가의 기능을 지향하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신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문제점과 구조를 간과한 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관치행정인 전시행정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경제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고 볼 때 본 개정안이 과연 헌법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배치되지 않고 국토이용관리법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는 규정에 합당한가 하는 점 그리고 사권(私權)과 공익이 충돌되지 않고 조율되고 조정된 가운데서 성안돼 있는가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첫째로 농업용지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제121조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농경지 210만ha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100만ha 이외의 농경지 110만ha가 준농림지역으로 편입되는바 이로 인해서 농지의 타용도전용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농업진흥정책은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허가면적이 확대되어서 무분별한 전용이 급증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농공단지도 유희화된 상태에서 공장설치를 위한 무분별한 전용이 허용된다면 농지가 생산적인 산업부문보다도 투기목적에 의한 임시전용으로 귀결되어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용지의 축소는 결과적으로는 식량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급자족이 차질을 빚고 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농산물의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서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완상 부총리의 일진 국회답변에서 보면 북한의 쌀생산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통일된 뒤의 대책은 이 개정안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한 사실을 아울러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국토환경의 훼손문제를 지적합니다. 개발가능면적이 16%에서 42%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경의 파괴나 오염이 초래될 것입니다. 환경처가 요구했던 공단조성 시 차단녹지 설치라든가 신도시 건설 시의 환경보전림 조성 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이 무시됨으로써 환경과 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염려가 증폭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발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전매할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이용의무부과조치, 유희지 지정, 전매토지의 국가선매 등의 규정을 두었음에도 준농업용지로 전용될 경우 토지등급의 상승으로 인한 투기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200만 원의 과태료만 지불하면 토지전용 등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자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 토지수급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서는 10년간 공업농지 등의 도시산업목적의 수요토지의 규모를 1291km<sup>2</sup>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개발가능지역이 무려 20배가 넘는 2만 5878km<sup>2</sup>나 되어서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정부계획이 쉽게 바뀐다는 것은 정책입안과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토지수급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처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기업투자 유인이라는 함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기업, 특히 현재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용도지역을 단순화함으로써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비업무용 땅들이 업무용화될 수 있으며 행위제한방식의 전환으로 토지이용범위가 확대되어서 토지개발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땅값 상승 그리고 토지과다소유자 보호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미이용방치 또는 전매토지에 대한 규제강화안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자칫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성안된 본 개정안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전용농지 및 거래규제완화는 국토를 부동산투기장화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만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만사는 선후와 완급이 있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는 우를 범한다면 본 개정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본 개정안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찬성입장에 게시는 민주자유당의 이금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의원을 대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토이용관리제도의 개편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국토이용의 장기적인 방향을 토대로 전국을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대분류하여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규제의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은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나치게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 규제내용도 보전할 토지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를 벗어나도 농지법 환경법 산림법 등 개별법이 유사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서 공장건축에 있어서 이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실제로 2, 3년이 걸리는 등 경제활동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국토를 개발과 보전의 조화원칙에 따라서 보전해야 할 것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 바로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구분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와 개별허가는 또한 농지법 산림법 등 각 개별법이 담당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전 국토를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번의 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우려된다는 존경하는 오탄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제도개편으로 농지의 과다한 잠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남한에 있는 전 토지가 우리들이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평수로 300억 평에 이릅니다. 300억 평 중에서 200억 평이 산지입니다. 나머지 100억 평 중에서 하천과 호수가 22억 평입니다. 결과적으로 78억 평이 농지 등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택지나 공장지대로 쓰여지는 토지가 즉 13억 평입니다. 그 13억 평 중에서 소용될 토지를 넘겨 놓고 보니까 아주 땅이 사실은 금싸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토지를 금싸라기로 만든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 법을 적용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공업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이 향후 10년 동안 4억 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즉 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 쓴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태부족한 토지를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번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주요 요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차를 간소화할뿐더러 앞으로 개발하는 토지를 절대 안 되는 것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토지를 절차에 따라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공장부지 등으로 해서 경제에 활력소를 주고자 하는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둘째, 토지이용규제완화에 따라서 토지투기가 재연될 우려라는 점에 대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미 93년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정하였고 또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높여 현재 0.06%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2,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신경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토지전산망을 정비하게 되면 투기적 가수요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국의 58.3%를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설정하여 자연생태계와 농지 및 산림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준농림지역에서도 개정법률안 제14조의 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공장 또는 시설물의 설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농지법 환경관련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 통제되므로 농지와 산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보다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마는 이 개정법안은 92년 초부터 국토이용계획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학계 연구기관 단체 업계 언론계 농민대표 등 전국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이 법이 국토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정기국회에서 농지법 산지법 등 기타 토지관련법의 개정이 가능하고 내년 초부터 개선

될 토지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는 개정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결코 농지를 잠식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사회발전추세에 따라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토지수요에 부응하여 택지조성이나 공장건설 등 토지이용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데 그 진의가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6인 중 찬성 159, 반대 75, 기권 2표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하근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수 의원 인천 남구을 출신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자지정 실

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로 이어지는 현행 5단계의 절차를 공단지정과 실시계획승인 및 공업단지개발이 되도록 하는 3단계로 단축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는 민간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실수요자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일반건설업자도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적기 적소 적량 및 적가의 공장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고

넷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공업단지 지정단계로 앞당겨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즉 공단지정이나 고시 후 바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 공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이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공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공단지개발을 병자한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합법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공단을 개발할 수 있는 일정조건을 갖춘 자라는 시행자 지정요건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투기적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단지정을 전후하여 토지의 조기매입을 위한 길을 터놓아 보상비가 사업비에 미치는 토지취득 시점을 단축시킨다는 의미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의미라면 다른 법, 즉 공공용지수용에관한특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과의 형평성문제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는 조항인데 특히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허가 자체가 특례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파괴의 문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재할 것으로 이러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재할 구체적인 대안이 전무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률개정안입니다.

넷째, 그동안 공단지개발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몇몇 기관에 의해 독과점됨으로써 공단지개발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과 효율의 이익이 없었다는 것과 민간기업의 여유자금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공업입지선택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무계획적인 공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공단의 분포 및 신규 공단의 분양현황을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심하고 또한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의한 공단지개발을 분양가능 위주로 공업단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즉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공단지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비효율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단지배치계획 등을 통하여 이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는 하나 국토의 균형성 회복은 시장경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능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니만큼 동 법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국토개발의 불균형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장치마련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의 참여는 정부의 합동개발지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민간기업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며 자칫 수많은 민원과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규정삽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제출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적인 내용 그리고 다른 법과의 형평성문제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 법률개정안을 부결시켜 정부가 다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후 해당 상임위에서 시간을 갖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다시 회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임사빈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사빈 의원** 건설위원회 임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5년 후에는 1만 4000불의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에 제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에는 반드시 제조업 성장률이 높았다는 우리 경제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의 발전은 곧 우리 경제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공업단지 개발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공업단지 개발에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골격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하근수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현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3개 이상의 실수요 민간기업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민간기업이 공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단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공장용지의 확대공급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경우 토지매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토지투기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한 측면만 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둘째, 공업단지계획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이나 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부가 공업입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지 지정을 할 때 국민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민간기술과 자본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계획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창의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데 착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때 무계획적인 입지선정으로 국토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공장용지가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개발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공업단지 지정개발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지배되지 않고 공익을 전제로 한 시장경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취득을 위한 토지수용권 부여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주체성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질이 공공성과 공익성 부여에 있다고 보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실수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고 이와 같은 입법사례가 이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광업법, 도시계획법 등에도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업단지개발을 위한 토지취득시점을 앞당겨서 공업단지지정 시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업단지지정 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수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입법례는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개정안에서 공단지정이 되면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되는 것이므로 중복된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에 흐르고 특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의제한다는 것은 환경파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다른 법률을 의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다만 절차의 단축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일원화를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환경관련 법령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 법 개정안과 직접 관계가 없으며 이 법으로 환경훼손이 가중된다는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점을 감안하고 그동안 논의되어 오거나 시정할 사항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본 법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써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앞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153인, 반대 66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구 의원** 시흥시 군포시 출신 제정구 의원입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금번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여야 위원들 간의 검토결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표결 선택되었으나 본 의원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이러한 법률안들이 졸속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건설행정완화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할 사항은 과감히 풀어 버리고 국민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설행정의 실태입니다. 군사문화식 발상의 소산인 현행 그린벨트 규제는 철저히 해서 비합리적인 행정낭비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면 건설행정완화조치라는 명분으로 대자본이 잠식한 대다수 민유지를 무분별하게 이윤추구의 장으로 개방해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거나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이므로 항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이런 취지에서 토지공개념 추진을 행정의 큰 가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 제출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에 체육공원을 추가하고 민간도 도시공원을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 보장과 토지공개념정책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고 시설녹지에 건축물의 개축과 토지형질변경을 한다면 현재 도시공원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사유지와 시설녹지는 일대 개발붐에 빠질 것이 예상됩니다. 토지소유자가 민간자본과 결탁하여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공원을 개발함으로써 환경파괴를 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인천직할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계양산을 살리기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되어서 계양산의 자연을 원상태로 보전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원래 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간에 집단민원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법이 개정되면 더욱 격화되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입니다.

둘째, 정부의 토지에 대한 기본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공유지의 비율이 타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서 정부가 토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공유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의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대로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면 이러한 정부의 국공유지 확대방침과 모순이 됩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민간대자본이 공원을 개발하여 이를 관리청인 시와 군에 무상귀속하고 바로 점유권을 획득하여 유료도시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종종 민간개발업자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마저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이윤추구에 급급한 자본에게 통채로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는 체육공원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되어 이를 확대, 유추 해석하여 위락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보완책이 철저히 마련될 때까지 본회의 통과를 보류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최재욱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욱 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대구 달서을구 출신 최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한 도시생활에 시달리는 도시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여행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외국도시는 그래도 훌륭한 공원들, 큰 공원과 작은 공원들이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보고 산을 버려 놨다든가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지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친혜의 공원국가가 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정책을 안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도시공원법만 해도 그것이 10대 국회 최후의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제1조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명문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지역을 전국에 7536개소에 지정했습니다. 면적만 해도 78만 km<sup>2</sup>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구에 계신 분은 각 시장·군수실에 가 보면 여러 가지 관내지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지역

이 푸른 칠로 칠해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원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지역 중에서 77%가 미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버려 놔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지 말고 지정목적대로 공원구실을 하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드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길입니다. 지금 공원지역 땅의 약 80%가 사유지인데 이것을 정부 돈으로 우선 사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정부 돈으로 시설비용을 들여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의 유무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예산심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가 막대한 그러한 예산을 그리로 돌렸습니까?

또 그러한 결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재정의 여유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예산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의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원조성은 거의 어렵다 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공원화를 촉진시키는 길이 무엇인가?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더러 공원을 조성하라고 부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에는 민간인도 공원시설을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그 소유권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누가 자기 돈을 써 가지고 공원시설을 애써 지어 가지고 국가에 바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공원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는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개인은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이번 개

정안입니다.

즉 개인이 공원시설을 할 때 그것을 국고 몰수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조성해야 될 공원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민간자본으로써 지을 수는 없겠는가, 그 길을 터 줄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제정구 의원께서 환경파괴라든가 또는 무분별한 개발을 걱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되기 어렵게 지금 각종 보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하고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대표는 물론이고 학계나 주민대표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그리고 또 지방의회까지도 심의에 참여해서 결정한 공원조성계획에 맞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안목과 치밀함은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주 대단합니다. 특히 당해 지역의 환경과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민감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심의를 통과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설치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원을 그야말로 공원답게 하려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근린공원은 건폐율이 2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건폐율이 5%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4% 이하로 건폐율을 아예 딱 제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이 아니라 위락단지가 들어선다든가 그것이 큰 치부의 수단이 되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그러한 시설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 법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공원을 조성하면 사유지를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면 시설은 물론 사유지까지 그대로 뺏습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대신 좀 해 주시오’ 이렇게 길을 터워 놓고 애써 그 부탁을 들어주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몇백 억어치 또는 몇십 억어치 그것 별금으로 국가에

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권고는 해 놓고 그것에 응하니까 벌금을 때리는 그러한 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봐서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즉 현재 공원시설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공원시설금지법을 명실상부한 공원시설촉진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의 취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GNP 향상에 걸맞지 않게 정서생활의 영양실조상태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시설이 태부족하여 조금 괜찮은 곳이라면 주말에 온 난리법석을 치르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8000에 가까운 전국의 도시공원지역이 제대로 공원구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좋은 휴식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154, 반대 65, 기권 1인으로서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19시17분)

**○의장 이만섭** 다음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남재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두 의원**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남재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한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1993년 11월 7일에 폐막되는 대전엑스포93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이사를 15인 이내로 25인 이내로 확대하여 관계기관 참여기업 등의 참여기회를 그 폭을 넓힘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공자원부장관의 이사장임면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 등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장의 제청 또는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전직할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권리와 의무 및 잔여재산을 재단에 포괄승계토록 함으로써 박람회관련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넷째, 재단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예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재단설립위원의 위촉 등 재단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3년 7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93년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심사보고서(대전세계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만섭** 이 안건에 대해서도 찬반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의원**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입니다.

오늘로 대전세계박람회가 25일 남았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대전엑스포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대전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또 법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2조에 의하면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서는 국회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 본 법안을 회부키로 한 것은 바로 이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으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83조에 의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법 제83조의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규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아울러서 지적합니다.

이 관련위원회는 상공자원위원회와 경과위원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또 제83조2항에 의하면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법안이 이러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제82조 그리고 국회법 제83조제1항·2항에 정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상정된 이 법안이 지금 사실 절차상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법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조금 전에 남재두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과학교육의 장으로 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프랑스의 라 빌레떼라고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장에 1년에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참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단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새로 신설되는 사후관리의 이 재단에 연 5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년 다녀가는 대단위 수학여행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단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은 토지 27만 3000평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대시설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자산이 바로 이 재단이 관리하게 되는 재산입니다.

지금 관련 행정부서의 계획에 의하면 그중에서 19만 1000평은 EXPO공원으로 영구 보전하고 8만 2000평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업체에게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재단이 하고 경영은 민간용역회사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모든 재원을 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관리할 민간용역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8만 2000평의 땅을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공시지가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회사에게 개발권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800억 원에 달하는 이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이 용역회사에 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은 분명히 교육적 내

용이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교육적인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보증이 지금 상정된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교육적 내용이라기 보다는 위락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고 적자를 보면 안 된다고 하는 데에 묶였기 때문에 이 자체수입수지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 때문에 이것이 위락장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교육시설로 쓴다고 하는 그 목적이 채산성이라고 하는 그 수단에 묶여서 위락장화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이 대덕연구단지과 또 과학기술처의 의견에 의하면 박람회장 일부가 상업용지로 바뀌어 민간에게 매각 처분되면 이것이 대규모 위락시설화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연구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적 사업에 국한해야 된다, 위락장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락장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명시하는 대신에 그것 때문에 있을지도 모를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보조, 정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나 문화복지 등 그런 공익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대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취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기념을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재단법의 경우에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값 광고수입, 심지어 체육복권까지 발행하게끔 함으로써 그 재정을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육경쟁으로 결판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교육, 특히 과학교육은 신기간산업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성을 갖고 잘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의 과학마인드를 길러 주고 또 어린이들의 꿈의 수학여행지가 되고 모든 국민이 학부모가 되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이 재단을 존속시켜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단이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아서 수지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을 해체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전의 강남이라고 하는 노른자위 땅인 8만 2000평 이것을 상업용지로 바꾸고 이것이 특정재벌기업으로 넘어가고 그 재벌은 이미 소유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무 손해도 없고 돈만 버는 데 이 재단은 적자로 허덕이다가 해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법은 제6조2항에 '재단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단의 수익금이 생길 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발전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설의 발전과 보완에 재투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인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도 본 의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락장화하고 위락장화하는 것 때문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돌리자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뜰한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한 알사탕 하나 물려서 통과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도 대전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지역 유권자들이 알사탕을 입에 물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역이기주의에 박수를 칠 그런 수준 낮은 시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조항의 삭제를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EXPO특위 입법소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7일 하루 종일 논의를 한 결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7명의 입법소위원들이 소속 정당도 다르고 출신지역도 다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러한 내용이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 또 출신지역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합의된 그 합의안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부 여당의 당정회의 결과 전부 뒤집혔습니다. 요즘 시셋말로 이 법안에도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것 같더군요.

그 반대이유를 들으니 민자당 측의 반대의견을 물어 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본 법은 제5조2항에 '재단은 해당 사업을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부분은 ‘위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특정인이나 법인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법은 입법의 일반원리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관한 내용은 행정과 사법의 소관이지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탁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 강제규정에 관해서 선정될 용역업체가 이미 특정재벌업체로 내정된 속에 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가 어떤 기업입니까?

노태우정부 당시에 이동통신사업을 선정에 주려 했던 것이 상기됩니다. 이것이 신정부의 선정 사건이 아니냐고 우려가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법안이 임시국회 하루 전날 EXPO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개회 3일 전에도 도착해야 될 이 법이 하루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특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 법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재단법을 올림픽 이후에 소관 상위에서 입법한 전례도 있습니다. 밴쿠버EXPO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려 200여 회의 공청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스페인의 세비야EXPO에 있어서도 그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87년부터 무려 5년간이나 까루뚜야93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서 사후관리방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졸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본 법안은 국회 EXPO특위뿐만 아니라 상공자원위 경과위 등 관련된 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의 수렴과정도 필요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법은 어떤 특정정파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교육이 어디 여당 야당이 있겠습니까? 오늘 통과되면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고친다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함석재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석재 의원 대전엑스포지원특위의 함석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엑스포 종료 후에 엑스포관련 자산 일체를 지금 토론 중인 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출연하고 그 운영은 전문경영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내용의 본 법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사업의 전문성과 창의성 공익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 법안을 찬성합니다.

찬성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동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대전엑스포가 위치한 대전직할시에 엑스포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일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이사는 대전시장의 제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토록 하고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을 사전에 대전시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사업수익이 있을 때 그 일부를 지역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엑스포지원특위에 동 법안에 많은 수정을 가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에 임하신 김원웅 의원의 반대토론의 요지는 재단의 성격이 공익을 중시한 비영리법인이므로 부실화에 대비하여 정부출연 또는 보조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으니 반대한다는 요지입니다.

물론 기념재단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비영리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지균형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재정으로 메꾸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가는 그 사업이 비록 공익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주체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게 하여 사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전엑스포가 끝난 후에 엑스포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후활용은 정부지원 없이 재단의 자체수익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재정형편이 어려

운데도 불구하고 541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운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정부출연근거규정을 돕으로 해서 재단이나 민간전문업체가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엑스포공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부실화를 자초할 우려까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의 초기에는 엑스포공원의 입장수익금만으로 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상공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법 시행령과 재단의 정관내용 중에 전문업체 선정과정과 위탁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부실화 운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몇 번이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원 운영의 적자를 메꾸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공원기반시설의 보완과 주요시설의 보수 그리고 교육적 관심유발시설 등을 추가하기 위한 적절한 초기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이 갖추어질 것이고 입장객도 연간 500만 정도가 확보되어 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과다한 수익금도 예상할 수 있어서 이를 지역지원자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놓은 바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법안이 오늘 임시국회에서 통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엑스포관련 시설의 사후관리 중 뒷받침할 수 있는 동 법안이 통과되어야 늦어도 엑스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문업체가 선정되어 기념재단과의 사업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94년 상반기까지는 엑스포공원이 개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원웅 의원께서는 엑스포기념재단법안이 엑스포지원특위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것이 국회법 82조 위반이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이 동 법안에 대해서 엑스포특위에 회부한 것이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이며 국회법 82조나 83

조의 위반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전엑스포는 상공자원위원회라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2일 본회의에서 대전세계박람회의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대전엑스포특위구성결의안을 보면 대전엑스포특위가 엑스포관련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992년 10월 2일 본회의에서의 엑스포지원특위구성의 건의 주문에 따르면은 1993년도 개최 예정인 대전세계박람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심의를 위해서 별도의 국회법 82조의 규정에 따른 본회의의 의결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전엑스포특위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관계사안에 대한 엑스포특위에 의 회부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것으로 사전양해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기념재단법안에 대한 엑스포특위에 대한 회부는 적절한 것이고 우리가 상공자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의견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와 상임위원회 간에 소관사항이 중첩되는 경우 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특위 구성취지에 합당하고 또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1988년 7월 1일 서울올림픽에 의한 북한참가촉구결의도 당시 소관상임위원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올림픽특위에서 결의안을 의결해서 제출했고 또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안도 88년 7월 21일 올림픽특위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웅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이송된 법안이 각 의원에게 배부된 지 이틀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EXPO특위에서 상정해서 심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안이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이 이틀만인 것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EXPO특위에서 의결로 동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동 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빨리 오늘 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EXPO관련 자산의 사후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래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 건

(19시20분)

**○의장 이만섭** 지금 민주당의 류인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류인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여야를 망라한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EXPO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EXPO특위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불행한 전례가 다시는 이 의사당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으로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당신이 소속해 있는 사회지도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올바르게 의사를 진행했던 의장님에 대한 만감의 경의를 품었던 사람이로서는 오늘 EXPO특위에서 심의되었다고 하지마는 부적절하게 국회법을 위반해서 심의된 이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게끔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이 우리 모든 의안심의를 배정하시거나 총괄하실 때 왜 사계 여기에 전문가인 의사국장과 협의하셔서 최소한 관련상위인 상공자원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 같은 기회를 두었다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원웅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은 국회법 82조 83조 위반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의장께서 천려의 일실로 그 명민하신 지혜를 이번에만은 발휘하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번째로 동 법안은 마땅히 상공자원위에서 심의되어야 하고 최소한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PO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EXPO특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칭 그대로 EXPO특위는 EXPO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특위이지 EXPO가 끝난 뒤에 재산의 사후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지난 88년의 올림픽특위가 올림픽의 성공

적 수행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 사후재산관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은 해당 상위인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졸속으로 허겁지겁하게, 만약에 조금 오해를 하자면 마치 주인 모르게 살짝 떡 삼키는 식으로 소관상위인 상공자원위원회를 무시하고 EXPO특위에게 맡겼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의회운영 수준 이상의 어떤 흑막이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맑고 깨끗하게 운영해야 할 이 나라의 의회정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전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금방 찬성발언을 하신 분은 많은 법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관련위원회에 협의 안 된 두서너 개의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자당 선배 의원 여러분!

그때와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정치관계특별위원회나 기타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여야가 협상에 의해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이 결과적으로 법안을 만들 때에는 특위에서는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EXPO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을 위시해서 민자당이 아닌 의원들은 명백한 반대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상임위인 상공자원위와도 협의를 해야지 그러한 반대도 무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 많은 의혹을 받아 가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법조문과 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국회는 올림픽이다, 잼버리다, 거대한 여야 간의 쟁점이 되지 않는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해 왔던 관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전 세계가 우러러했던 올림픽을 치르고도 사후재산관리는 당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여러 날을 두고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재단법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고통분담을 하고 상하가 다 칼국수 먹는 이 시점에 과연 EXPO를 한다고 잔치를 벌인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에 전임자가 벌여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EXPO를 치러 가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EXPO에서 남겨진 재산을 우리 전 국민적 재산 아니면 EXPO 정신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후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제사도 지내기 전에 젓밥부터 뜻을 둔 마치 잘못된 스님 같은 노릇을 왜 우리 국가가 해야 합니까?

아직 EXPO 출범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해당 상위인 상공자원위를 포함해서 국회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그래서 EXPO가 끝난 뒤에 가장 알맞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이 법안이 잘못되어 줄속으로 통과된다면 첫째는 국회의 입법을 국회법과 확립된 관행을 무시하고 줄속으로 또 다시 처리된다는 문민정부에 알맞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앞날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잘못 뿌려진 독버섯의 씨앗은 더 큰 독버섯을 낳고 국민을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입법편의주의라는 중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금방 많은 의원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법안은 혹시 그럴 리가 없지만 특정 재벌이나 특정그룹을 위해서 미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국민들이 EXPO에 빠져 있는 동안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비는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향차 국민의 존경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국가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이 법을 이 자리에서 줄속으로 처리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여야 우리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서 소관상위인 EXPO특위와 상공자원위에 회부되어서 우리가 심도 깊은 밀도 있는 심의를 한 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됨으로써 떳떳하고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하늘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성금으로 국민의 노력으로 이룩된 EXPO의 잔여재산이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용 관리되도록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 법안이 이 자리에서 보류되고 더 깊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민자당의 함석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시겠어요?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석재 의원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EXPO는 EXPO관련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관 상공자원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전세계박람회를 특히 지원하기 위해서 92년 10월 2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특위와 상임위원회 간의 소관사항이 중첩되는 경우는 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특위구성취지에 합당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례도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봐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 89년도에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라고 해서 다시 그 법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요 그것은 만약에 상공위원회에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을 처음에 다루었으니까 그 논리대로…… 류인학 의원님 말씀 논리대로 하신다면 상공자원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후에 EXPO 지원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특위에서 그 법안을 다루게 된 것이고 그리고 82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PO관련 기념재단법이 EXPO특위에 회부된 것은 82조1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EXPO특위에 회부된 것은 본회의 의결 없이 회부된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다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 관련이 있으면 EXPO지원특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3조를 보세요. 왜 이 조문만 가지고 와서……」 하는 의원 있음)

83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EXPO재단법의 신속한 처리가 EXPO관련 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만섭 조용하세요! 민주당의 채영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채 의원의 발언하세요.

○채영석 의원 민주당의 채영석입니다.

채영석이가 요새 조용하니까 국회가 조용하다고 칭찬을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 들한테……

그런데 만부득이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대전EXPO특위가 만들어질 때가 90년 10월 쯤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그때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위원회에서 도저히 대전EXPO특위는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야 위원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는데 특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 중에 이동진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그 어른이 꼭 이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서명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대중 총재님한테도 서명을 받아서 야당을 찬성했으니까 이것을 만들자……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대전EXPO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는 상공위원회에서 다루고 EXPO특위는 지원만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공위원들이 많이 결임을 했고 대전 출신들, 충남 출신들, 또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출신 의원들이 거기에 모여서 EXPO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해서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만든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13대에 제가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EXPO특별위원회를 결임했습니다. 법은 하나도 만든 일이 없고 예산은 한 번도 다룬 일이 없습니다. 전부 상공위원회 모 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위원회는 우리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물론 법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공자원위원회는 엄연히 법상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공자원위원회는 형의 위원회이고 특별위원회는 동생의 위원회입니다. 정치관계특별위원회처럼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의장이 결정을 내리셔서 모든 전권을 정치관계특위에 준다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법사위원회에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입

니다.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EXPO가 끝나고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 대전EXPO특별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나머지 모든 소관업무는 상공자원부, 상공자원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문공위원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상공자원위원회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후관리를 맡아야 할 상공자원위원이 법 만들어지는 것 법조문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할 때 국회의원 위신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의장께서 지금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잘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의장에 대해서 국회법 82조니 83조니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장이 더욱 의장으로서 잘하시고 우리 국회의 위상을 확립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의장이시라면 오늘 이 법안을 여기에서 다루시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장 주재의 양당 총무가 합의해서 이 문제는 정기국회에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EXPO가 8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입니다. 92일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고 대전EXPO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저명한 인사들과 또 과학계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만들면 가장 모양 좋은 기념재단을 만드는가? 기념재단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마는 그러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후세에 아무 의혹이 없는 또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다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투자한 자산, 투자한 토지가 금방 어디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에 있습니다. 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가 국회답게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가고 의장이 더욱 훌륭한 의장이라고 국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해서 의장이 그동안까지도 참 잘해 오셨는데 더욱 잘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소관위원회니 관련위원회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따지지 않고 하여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비가 있으니까 졸속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기념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의혹이 쌓인다고 하는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 좀 여야가 협의를 하고 또 관계되신 저명한 인사들의 의견

을 많이 들어서 우리 국회가 졸속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국회를 국회답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신 뒤에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침 그때의 EXPO특위를 만들 때에 상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실정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경위를 보고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의사진행발언을 야당이 두 분 하셨는데 여당이 한 분 더 하셔서 두 번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두 분 하시고 그리고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의원 채영석 의원께서 당시 상공위원회 간사를 하였고 본 의원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증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관련위원회가 과연 특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선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딱 3분만 제가 양해 얻겠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특정한 상위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여러 상위에 관련된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능률 있게 의견을 모아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가 상위상위요 특위가 하위상위요 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하나 더 어느 상위가 이 경우에 관련상위이고 관련상위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PO특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된 상위는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 상공위원회, '자원' 빼고 상공위원회 그다음에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위원회라도 단순논리로 한다면 이 많은 위원회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항이 EXPO라는 상공적인 측면이고 과기처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다 이것이 더 집약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와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원회를 관련위원회라고 규

정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관련위원회를 이 법 82조2항…… 법 83조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계신 채영석 의원님과 제가 같이 간사로 있을 때 89년 5월 17일 정부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법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16일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 11월 20일에 개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공위원회로 안 넘어가고 EXPO특위로 넘어가서 전혀 상공위원회와 상의한 바 없이 EXPO특위 단독으로 90년 12월 15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로 보아서 이번에 EXPO특위에서…… 의장께서 나중에 이 EXPO특위가 끝난 다음에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을 EXPO특위이다 낸 것은 하등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올렸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섭 잠깐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장의 심경은 의장이 잘못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꼭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연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생각이, 왜 이것이 대전EXPO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작되어 가지고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누구든지 나한테 빨리 좀 얘기를 안 해 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전연 못 듣고, 총무단에서 전연 이런 얘기를 못 들었던 말이에요. 여기 와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장기욱 위원장이 말씀하신 국회법 82조 83조 그것은 나는 다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되어서 예를 들면 정치심의특위다 이러면 정당법 선거법 뭐 정치자금법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전부 탄 위원회에 한번 갔다가 와야 되는가, 나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여야 의사진행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서 내 자신이 특별히 이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꾸지람을 주셨는데 달게 받고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만큼 토론을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표결을 해서 그만 처리하도록 하시지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그러면 먼저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47인 반대 1인 기권 67인으로써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20시25분)

○의장 이만섭 다음은 제15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열두 분 의원을 추천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국회위촉대의원 명단

강우혁 의원(민주자유당)

김광수 의원(민주자유당)

김찬우 의원(민주자유당)

김한규 의원(민주자유당)

송두호 의원(민주자유당)

주양자 의원(민주자유당)

김병오 의원(민주당)

김상현 의원(민주당)

양문희 의원(민주당)

이해찬 의원(민주당)

강희창 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문창모 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이상 12인)

※임기 : 1993년 8월 1일-1996년 7월 31일(3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위촉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다 처리되었습니다. 마는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미처 신중하게 사전에 대처하지 못해서 야당이 퇴장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많은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정현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 주시고 또 오늘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 처리하는 등 그 성과가 컸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교섭단체장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이라도 정치관계법 등을 계속 심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계류안건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오는 8월 11일까지 공직자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회회기를 통해서 일하는 생산국회상 또는 새로운 민주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출석 의원 수(277인)

○출석 국무위원

법 무 부 장 관	김 두 희
건 설 부 장 관	고 병 우
교 통 부 장 관	이 계 익
체 신 부 장 관	윤 동 윤

과학기술처장관 김 시 중  
 정무장관(제1) 김 덕 룡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최 수 병  
 노동부차관 김 훈 기

**【보고사항】**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조홍규	내 무	경제과학	민주당
류인태	경제과학	내 무	"

(7월 8일 자)

**○특별위원 선임**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차수명

(7월 10일 자)

**○의안 제출**

**국회의원(반형식)징계요구의 건**

(7월 6일 조홍규·이원형·하근수·최재승·  
 김명규·이규택·김옥천 의원 외 89인 발의)

발의자 조홍규 이원형 하근수 최재승  
 김명규 이규택 김옥천  
 찬성자 강수립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신진옥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우정  
 이윤수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욱철 한광옥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국회의원(이부영)징계요구의 건**

(7월 6일 반형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안**

(7월 7일 신상식·박희태·양창식·강신옥·  
 남재두·김영일 의원 외 16인 발의)

발의자 신상식 박희태 양창식 강신옥  
 남재두 김영일  
 찬성자 강삼재 강용식 강인섭 김영진  
 김용오 류홍수 문정수 박범진  
 박헌기 박희부 백남치 성무용  
 송천영 최재욱 하순봉 황윤기

7월 8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

**12·12 군사쿠데타, 울곡비리, 평화의 댐 건설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7월 12일 김태식 의원 외 101인 발의)

발의자 김태식  
 찬성자 강수립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충현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신진옥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우정 이원형 이윤수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욱철 최재승 하근수  
 한광옥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김동길  
 김진영 박찬중 양순식 조일현  
 한영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중 개정규칙안**

(이상 2건 7월 12일 국회운영위원장 김영구 제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대안)**

(7월 12일 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제출)

**○의안 심사**

**광주과학기술원법안**

(7월 3일 정부 제출)

(7월 12일 경제과학위원장 신진욱 보고)

수정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월 7일 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중 개정법률안**

(7월 3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3일 노동위원장 장석화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철도소운송업법 중 개정법률안**

(7월 3일 정부 제출)

(7월 12일 교통체신위원장 양정규 보고)

원안의결

**우편환법 개정법률안**

**삭도·궤도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7월 3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2일 교통체신위원장 양정규 보고)

이상 2건 수정의결

**도시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7월 3일 정부 제출)

(7월 13일 건설위원장 서정화 보고)

수정의결

**국토이용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7월 3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7월 13일 건설위원장 서정화 보고)

이상 3건 원안의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안**

(7월 3일 정부 제출)

(7월 12일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남재두 보고)

수정의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5월 19일 이원형·박상천·강수립·강철선·

정기호 의원 외 89인 발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월 3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7월 12일 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보고)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청원 제출**

**충주문화원사 개·보수를 위한 국고지원에 관한 청원**

(7월 6일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산 1번지 장수봉으로부터 이종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충주문화원 건물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고지원을 바라는 내용임
2. 1970년에 준공된 충주문화원은 범시민운동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운동에 착수하여 당시 2000만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립한 후 향토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그동안 예산형편상 개보수를 하지 못하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내부구조도 문화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문화원 자력으로나 지방재정 형편상 시비지원금도 어려운 실정인바 부득이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이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임

7월 7일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회부

**'94시설채소시범단지 조성에 관한 청원**

(7월 6일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원곡리 364번지 채준병 외 22인으로부터 이종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94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의 부담 없이 국비 및 도비만으로 지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임
2. '94시설채소시범단지조성사업은 국비 30%, 도비 15%, 군비 15%, 용자 30%, 자부담 10%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자치단체는 15% 부담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사업희망농가조사 시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여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키 위해 시·군의 부담이 없이 도의 지원을 30%로 조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임
3. 농어민후계자들은 대체로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농민신용보증증권으로 대체하도록 보증기금을 확대함과 아울러 시설원예 및 각종 농업시설도 등기되어 농가의 재산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임

7월 7일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

**문장대 온천개발증지에 관한 청원**

(7월 6일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562 충주상공회의소 김연권으로부터 이종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경상북도 상주군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는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따른 폐해가 심각히 우려되므로 개발계획의 전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임.
2. 당 지역에 대한 온천개발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의 전면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임
  - 가. 방류되는 오수로 인하여 남한강 및 한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됨
  - 나. 당 지역은 협곡지대인 관계로 하천수가 극히 적어 오염수 유입 시 자정능력이 없어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우려됨
  - 다. 농업용수 사용불가로 피산지역 내 6개 읍·면지역의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
  - 라. 수질오염에 의한 전염병 발생과 아울러 속리산국립공원 및 화양동 청천면 등 천혜의 관광지로서 자연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 파괴될 우려가 있음

7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경상남도 소재 구동래군 지역의 복군(復郡)에 관한 청원**

(7월 9일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대라리 91-5 공태도로부터 나오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경상남도 관내 구동래군 지역은 1973년 행정편의를 위해 양산군 지역에 편입된 이후 7만여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 지역을 복군시켜 달라는 내용임
2. 정부는 구 동래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동 지역 내에 있는 기장에 86년 군출장소 설치 이후 90년에는 군 규모의 9과 28계의 기구를 설치해 두고 있으나 이는 중간관리관청만 하나 더 생긴 것일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3. 동 지역은 경상남도 내 29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1위이고 현재 3000여 세대의 아

파트가 시공 중에 있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바 현재 양산군에서 설치한 동부출장소를 군으로 승격시켜 본래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던 구 동래군을 복군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우박피해농가 국가지원대책에 관한 청원**

(7월 9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석문1리 191번지 전인택 외 667인으로부터 박경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93년 6월 8일 내린 우박으로 인해 고추 담배 채소 등 발작물이 참혹한 피해를 당한 데 대해 국가지원제도가 미봉적이고 소극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임
  2. 청원인들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지난 6월 8일 내린 우박으로 인해 폐농상태에 처해 있는바 이들을 위한 국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임
    - 가. 농업재해대책관계 법규상 재해발생 시 국가지원이 임시 생계유지에만 그치고 재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미흡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등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함
    - 나. 1ha 미만의 농가 중 소유면적의 50%이상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만 생계보조가 가능하도록 피해면적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어 1평이라도 초과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실질적 재해보상책이 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
    - 다. 동 지역은 상습적으로 냉해, 우박피해를 당하는 지역이므로 이의 대책을 위하여 비가림시설사업의 확대지원 및 국가보조를 요구함
    - 라. 92년에도 우박피해가 있어 저리영농자금 융자와 농자재가 지원되었는바 93년에도 이와 같은 지원을 요청함
-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재산손실보상법 제정에 관한 청원**

(7월 12일 대전직할시 대덕구 장동 323-3 이상태 외 359인으로부터 김원웅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재조정과 아울러 그동안의 재산손실에 대하여도 손실보상관련법을 제정하여 달라라는 내용임
2. 청원인들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장동 이현동 용호동 삼정동 미호동 일대의 지역주민들로서 동 지역이 20여 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제한으로 말미암아 인접지역과 도시발전의 불균형은 물론 주택개발의 제약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등의 여건 속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당하면서 살아 왔는바 이제 자연부락만이라도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신설과 주택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과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재산소유 주민이 입은 그동안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법을 제정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임  
 소개의원 : 김장곤 원혜영 제정구 박계동  
 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

(7월 1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주공아파트 9동 503호 이상복으로부터 이영권 의원 외 14인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은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위임규정만 정하고 해직기간 동안의 보완점 마련이 없어 특별채용된 자들의 공직근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완개정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임
2. 청원인은 1980년 정치적 격변기에 해직되었다 동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여 년이 지난 후 원직회복을 하였으나 해직기간 동안의 공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책정된 급여호봉은 해직 당시의 호봉이 그대로 적용되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고 있고 경력평정 시의 불이익으로 승진기회가 사실상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정년까지도 근무하여도 퇴직 후에 연금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등 수많은 부당한 처우하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과 같은 처지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복직

된 자들은 해직기간의 70%의 경력을 인정하여 승급 내지 승진 임용된바, 청원인 및 1130여 명의 복직자에게도 해직기간의 60%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승급 및 연금합산이 이루어져 보수의 개선과 아울러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 법 제4조를 개정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임

- 소개의원 :곽정출 이강두 김종완  
 원광호 박계동 김충현  
 조순승 이우정 정대철  
 신순범 조윤희 박 실  
 이호정 이해찬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80년 정화조치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명예회복  
및 원상복직에 관한 청원**

(7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종근으로부터 최상용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요 지

1. '80년 신군부세력에 의한 정화조치로 인해 부당해고 및 삼청교육 피해를 본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원상복직 및 보상을 하여 달라라는 내용임
2. '80년 당시 동일한 맥락에서 발생한 해직공무원, 언론인, 정부투자기관 등 각계각층에 걸친 피해자들은 특별조치법이나 다른 구제조치로 명예회복과 원직회복이 이루어졌으나 일반기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만은 자율적인 정화위원회 결정에 따랐다는 이유로 구제대상에서 배제되어 법 적용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있는바, 이제 부당하게 침해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 회복을 위해 이들에게 명예회복과 원상복직을 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임

- 소개의원 : 김말용 신계륜  
 노동·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심사**

**윤한봉 씨에 대한 지명수배 해제 등 사법적 처리  
및 안전한 귀국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

(92년 9월 4일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473-20 윤광장 씨 5만 8696인으로부터 이부영 의원 외 14인의 소개로 제출)

(7월 12일 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보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에 관한 청원**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56-38 동원빌딩 5층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단병호 외 12인으로부터 원혜영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7월 12일 상공자원위원장 안동선 보고)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서면질문서 제출

수입밀 검역에 관한 질문서

(7월 5일 조일현 의원 제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등에 관한 질문서

(7월 6일 이희천 의원 외 11인 제출)

이상 2건 7월 7일 정부에 이송

재소자에 관한 질문서

(7월 7일 조일현 의원 제출)

무공훈장에 관한 질문서

(7월 7일 강창성 의원 제출)

동장임명에 관한 질문서

(7월 7일 하근수 의원 제출)

이상 3건 7월 8일 정부에 이송

대전전문대에 관한 질문

(7월 7일 김영진 의원 제출)

정부에 이송하겠음

국내 밀에 관한 질문서

(7월 9일 조일현 의원 제출)

평화의 댐에 관한 질문서

(7월 9일 최재승 의원 제출)

이상 2건 7월 10일 정부에 이송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서

(7월 10일 박찬중 의원 제출)

7월 12일 정부에 이송

비행장에 관한 질문서

(7월 12일 한화갑 의원 제출)

7월 13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방송용 주파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7월 5일 정부 제출)

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무부 사정 결과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경원산업 재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공항파견경찰 및 슬롯머신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지방문화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5건 7월 6일 정부 제출)

국립묘지 안장 및 12·12사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7월 7일 정부 제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7월 8일 정부 제출)

TV방송현황과 문화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TV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개인마주(馬主)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국토정보관리를 위한 원격탐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마약밀매 검거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7월 9일 정부 제출)

이상 14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기타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5월 15일 대한적십자사총재로부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 요청이 있었음

## \* 미합중국대통령(빌 클린턴) 연설

일 시 1993년7월10일(토) 17시27분

장 소 국회본회의장

### \* 미합중국대통령(빌 클린턴) 연설

○의장 이만섭 미합중국 빌 클린턴 대통령각하 내외분, 존경하는 방문단 일행과 내외귀빈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국회의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 미합중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곳 한국의회민주주의의 전당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통령께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가꾸어 오신 미래를 향한 이상과 포부를 이 자리에 서 직접 듣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하!

본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탐독해 온 미국의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는 ‘모든 것은 변한다—뭔가 새로운 것으로, 뭔가 낫설은 것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탈냉전시대의 불확실성과 소용돌이치는 변화의 물결에 직면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세계에서 가장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오르면서 행하신 취임사 가운데 ‘변화를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미국의 부활’을 이룩하고 새로운 시대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시던 늠름한 모습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과감하고도 능동적인 개혁을 통해 신한국의 건설을 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이며 가장 긴밀한 동반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창출을 위해 함께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취임 후 외국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의회연설을 바로 우리 국회에서 하시게 되

었다는 것은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관심과 열의 그리고 애정을 갖고 각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클린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따뜻한 우정을 미 국회의회와 국민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각하의 미래 지향적인 식견과 희망찬 신념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연설을 하시기 전에 그 지혜와 역량과 아름다움으로써 새 시대의 새로운 영부인상을 보여 주고 계신 ‘힐러리 로덤 클린턴’ 여사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여러분 그러면 미합중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일동 박수)

○미합중국대통령 빌 클린턴 의장님, 의회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위해 이곳에 모인 각 정당 국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아내,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그밖에 미국 군사·정치지도자와 이곳 민주주의의 전당에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전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수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후 한국의 활기와 문화는 여러 면에서 세계에 알려졌고 서울은 계속해서 힘차게 성장했으며 한국경제는 발전을 거듭하였고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하였으며 UN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대한 업적은 과감한 민주주의 기수인 김영삼 대통령을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가깝습니다.

우리 양국은 자유 수호를 위해 어깨를 맞대고 싸우면서 혈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우리 양국은 상당히 균형을 이룬 300억 불 이상의 규모의 무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발전은 양 국민 간의 공통된 가치관을 다시 한 번 증폭시켜 주었습니다.

43년 전 투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한국에 파병했을 때 그는 '신 앞의 모든 자유인은 모든 인류를 위해 같이 일하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국국민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국민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로 이 지역 국가들은 보다 안정되고 번영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을 비롯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나아가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공동의 힘과 번영 또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다짐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평양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신태평양공동안보의 기본요건과 미국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동경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기간 중 저는 와세다 대학에서 새로운 동반자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경제개혁이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적극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태평양국가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백만 명이 넘는 한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세기에 세 차례나 이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의 침략을 막고 경제성장을 영구화하고 해상의 권리와 기타 다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의 세계 지도력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구시대의 사치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의 세계적인 지도력이 지금처럼 필연적이고 가치 있는 투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무역으로 성장하는 한 미국의 국기가 이 불안한 세계에서 민주주의 희망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한 미국 지도력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신태평양공동체안보를 위해 네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 공약이며

둘째, 대량파괴무기 확산의 금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며

셋째로 공동안보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끝으로는 이 지역의 민주화와 보다 개방된 사회를 유도하는 일입니다.

(박수)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를 위한 미국의 기초적 역할은 군사주둔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및 태국 등 5개국과 체결한 상호방위협정을 재확인합니다.

이런 협정들은 협상당사자들에게 유익하며 미군으로 하여금 상당한 수준의 전방군사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경쟁보다는 평화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군의 군사주둔비용을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두 주재국에게 있어 미군주둔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미양국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방위공약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냉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된 한국은 아직도 쓰라린 냉전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국민은 한국국민처럼 언젠가는 한국의 인위적 분단이 끝날 것이라고 항상 믿

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한국국민들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아직도 안전과 위협 사이에 완전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100만 무장군인은 대부분 DMZ로부터 30마일 이내에 배치되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계획은 그들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내정치 탄압과 무책임한 무기판매는 북한이 아직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중요한 관심지역입니다. 미군은 한국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이곳에 주둔할 것입니다.

(박수)

미국은 수만 명의 값진 생명을 한국의 산, 시내 그리고 하늘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백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위약함은 침략을 초래하며 평화는 전쟁억제력에 의존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주둔을 계속하려는 공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리핀과 합의해서 기지를 폐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큰 시야로 보면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쳐 미군주둔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지역을 넘어선 작전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미군철수를 동경했고 한·미군을 현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벨로주 우드 육해공합동군을 주둔시켰고 세계 최대 최신의 전함 인디펜더트호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철수의 신호가 아니라 미국이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신태평양공동안보상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발사장치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이 가공할 무기의 위협이 증대되어 냉전 시의 핵공멸의 악몽을 재현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은 걸프전 당시 공포와 파괴의 주범이었던 스커드미사일을 대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사정거리 600마일 이상의 보다 뛰어난 성능의 마사일을 개발 시험하여 수출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오사카를 위협하고 이란이 텔아비브를 위협하는 사정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의 유도탄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규정 준수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해서 중국에게 이 문제에 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평양국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미생물·화학무기 그리고 유도탄 개발기술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수주 후에 미국은 이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한반도 및 그밖의 이 지역 국가에게 있어 핵확산의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160국가가 그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회원국의 하나가 탈퇴를 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규칙을 추구합니다. 북한에게 비확산조약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비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포함한 국제원자력위원회의 모든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남북한 핵협정에 따른 상호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수)

우리의 목표는 끝없는 논의가 아니라 분명한 이행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침략을 방지하자는 것이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UN헌장과 국제핵비확산규정을 준수하는 한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를 위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수행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장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핵협정은 기존 국제협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를 한반도로부터 추방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생산도 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획기적인 협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다른 지역의 핵긴장을 해소하는데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핵확산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보다 광범위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 종결된 G—7회담에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G—7국가들의 저조한 실업률 감소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다룰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와 도전에 직면해서 나토를 적절히 변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어서 소련이라는 하나의 압도적인 침략위협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두 지역에는 냉전종식 이후 오랜 인종 및 종교분쟁 난민문제, 살인무기 및 마약거래 등 여러 문제들이 새로 발생하거나 재현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는 기존 안보기구인 나토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태평양지역에는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아태지역에는 단일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일동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90년대의 아시아지역의 과제는 여러 위협과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다각적 체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들은 이중감옥처럼 개별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집합적으로 공동안보문제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의 하나로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수개국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바로 우리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양국은 상호 협력했을 뿐 아니라 일본, 그밖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협조도 강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체제는 캄보디아의 화해를 지원하는 대규모 UN평화유지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체제는 지역과 소지역의 분쟁해소를 위한 신뢰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지역안보를 위한 대화체제

가 필요합니다. 이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세안 각료회담에는 미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는 그런 대화를 촉진하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신체제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동경 북경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경제협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장벽을 낮춤으로서 직장을 창출하고 지역긴장을 완화하며 지역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화기구 창설을 환영합니다. 올해 가을 워싱턴 주시애틀에서 개최될 APEC 각료회담 후 APEC 지도자 간의 비공식 경제회의를 열자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목표는 이 지역 강대국의 힘을 통합하자는 것이지 고립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무역 및 무기판매에 대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중국도 이 지역의 신안보 경제건설에 참여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중국이 아니라 참여하는 중국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지역안보대화의 시작이 미국이 철수하기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의 동맹과 전방군사배치를 없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냉전종식으로 지역대결, 혼란 및 군비경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공동안보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지역 국가들 자체의 위치와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종적 안보과제는 아태지역에 있어서 민주주의 확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는 자국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인접국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테러를 자행하지도 않으며 난민을 발생시키거나 마약·무기밀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무역상대국이 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화의 상대국이 됩니다.

민주주의나 인권은 아시아에서 맞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서구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천안문광장에서 민주정신을 선포한 차이링, 버마의 탄압을 반대하며 열변을 토함으로서 세계를 진동시킨 아웅산 수지, 러시아를 태평양의 훌륭한 민주국가로 이끌고 있는 보리스 옐친 그리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게 한 귀국의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각 당의 국회의원들 여러분의 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아태지역의 모든 국민의 모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치·경제개혁을 수행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방하여 전진케 하는 용기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박수)

확실히 모든 나라는 자국 고유의 문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서구로부터의 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적인 정신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역 전체를 통해 이러한 소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공개선거, 노조, 자유언론 등 시민사회의 초석이 되는 비정부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를 위해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아시아 민주주의 방송국을 창설할 것을 제의했고 머지않아 이 방송국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7년 전 미국의 건국시조들은 자치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곳 아시아 땅에서 하나의 신조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공동안보를 위한 굳건한 초석으로서 이 선언을 다시 천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태평양공동체안보에 대한 미국의 미래에 대한 구상은 미군의 계속주둔, 새로운 확전방지노력, 새로운 지역안보대화 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이러한 안보요소들은 경제적 경쟁은 활발하지만 평화적이며 다양한 국가들이 공동안보를 위한 동반자관계를 이루며 민주주의와 균형

된 군사력이 안보의 보루역할을 하는 태평양지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하루아침에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태평양공동체가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두 나라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1992년 올림픽마라톤에서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언덕을 이겨 내서 금메달을 딴 한국의 훌륭한 마라톤선수 황영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열과 인내는 오랜 고난의 역사를 이겨 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번영을 이룬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서로 어깨를 맞대고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실로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이 마라톤에서 같이 땀시다.

감사합니다.

(일동기립·박수)

(17시54분)

REMARKS BY H. E. BILL CLINTO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DDRESS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nk you very much, Mr. speaker, lead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all political parties here present joined together in our common devotion to democracy.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be here today with my wife, with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Defense, with other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s from our government in this great hall of democracy.

I first visited your beautiful capital city five years ago. Since then, Korea's energy and culture have shown themselves in many new ways, your bustling capital has continued to grow. Your economy has continued to expand. Your nation hosted the Olympics and has taken its place as a full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You have established new ties to Russia and to China. But no achiev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solidation of your democracy with the election of a bold democrat, President Kim Young-Sam.

Geography has placed our two nations far apart, but history has drawn us close together. Ours is a friendship formed in blood as our troops fought shoulder to shoulder in defense of freedom. Then as Korea's economy became the miracle on the Han, we built an economic partnership that today exceeds \$30 billion in fairly well-balanced trade. Today, Korea's democratic progress adds yet another bond of shared values between our two peoples.

When President Truman sent American troops to Korea's defense 43 years ago, he said he aimed to prove that, and I quote : 'Free men under God can build a community of neighbors working together for the good of all.' Our efforts together since then have benefited all our peoples not only the people of our own countries, but in the Asian Pacific region all who seek to live in peace and freedom.

Our relationship has made this region more secure, more prosperous, and more free. Now with the Cold War over and profound changes sweeping throughout your country, this whole populous region, and indeed throughout the world, we must create a new vision of how we, as a community of neighbors, can live in peace.

I believe the time had come to create a new Pacific community built on shared strength, shared prosperity, and a shared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Applause.)

Today I want to discuss the fundamentals of security for that new Pacific community and the role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lay. I had the opportunity just a few days ago at the G-7 summit in Tokyo to travel to Waseda University to talk about the economic aspects of that new partnership. And I think clearly all the economic reforms that we can make will benefit a great market system like Korea.

But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security comes first. Above all,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remain actively engaged in this region. America is, after all, a Pacific nation. We have many peoples from all over Asia now making their home in America, including more than 1million Koreans. We have fought three wars here in this century. We must not squander that investment.

The best way for us to deter regional aggression, perpetuate the region's robust economic growth, and secure our own maritime and other interests is be an active presence. We must and we will continue to lead.

To some in America there is a fear that America's global leadership is an outdated luxury we can no longer afford, Well, they are wrong. In truth, our global leadership has never been a more indispensable or a more worthwhile investment for us. So long as we remain bordered by oceans and powered by trade ; so long as our flag is a symbol of democracy and hope to a fractious world, the imperative of America's leadership will remain.

I believe there are four priorities for the security of our new Pacific community. First, a continued American military commitment to this region. Second, stronger efforts to comb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rd, new regional dialogues on the full range of our common security challenges. And, last, support for democracy and more open societies throughout this region.(Applause.)

The bedrock of America's security role in the Asian Pacific must be a continued military presence. In a period of change, we need to preserve what has been reliable. Today we, therefore, affirm our fiv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with Korea, with Japan, with Australia, with the Philippines and with Thailand.

Those agreements work because they serve the interests of each of the states. They enable the U. S. Armed forces to maintain a substantial forward presence. At the same time they have enabled Asia to focus less energy on an arms race and more energy on the peaceful race toward economic development and opportunity for the peoples of this region.

The contribution Japan and Korea made to defray the cost of stationing our forces under scores the importance of that presence to both of those countries. There is no better example of that commitment than our alliance with your nation. As the Cold War recedes into history, a divided Korea remains one of its most bitter legacies. Our nation has always joined yours in believing that one day Korea's artificial division will end.(Applause.)

We support Korea's peaceful unification on terms acceptable to the Korean people. And when the reunification comes we will stand beside you in making the transition on the terms that you have outlined. But that day has not yet arrive. The Demilitarized Zone still traces a stark line between safety and danger. North Korea's million men in arms, most stationed within 30 miles of the DMZ, continue to pose a threat. It's troubling nuclear program raises questions about it's intentions. It's internal repression and irresponsible weapons sales show North Korea is not yet willing to b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Community of Nations.

So let me say clearly, our commitment to Korea's security remains undiminished.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vital American interest. Our troops will stay here as long as the Korean people want and need us here.(Applause.)

We lost tens of thousands of America's best in Korea's mountains and mud and sky. But Korea lost millions.

That sacrifice affirmed some old truths : vulnerability invites aggression. Peace depends upon deterrence. We cannot forget those lessons again.

And so it is throughout the region. Our commitment to an active military presence remains. Our mutual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to close our bases there should not because for Asian alarm. The larger picture tells a different story. We have obtained increased access for our forces throughout Southeast Asia to facilitate our presence, and if necessary, to project our forces beyond the region.

Hear in Korea we have frozen American troop withdrawals and are modernizing Korean and American forces on the peninsula. We have deployed to Japan the Belleau Wood Amphibious Group and the U.S.S. Independence Battle Group, the largest and most modern in the world. These are not signs of disengagement.

These are signs that America intends to stay.

The second security priority for our new Pacific Community is to combat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We cannot let the expanding threat of these deadly weapons replace the Cold War nightmare of nuclear annihilation. And today, that possibility is too real.

North Korea appears committed to indiscriminate sales of the SCUD missiles that were such a source of terror and destruction in the Persian Gulf. Now it is developing, testing and looking to export a more powerful missile with a range of 600miles or more enough for North Korea to threaten Osaka, or for Iran to threaten Tel Aviv.

We have serious concerns as well about Chin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gainst missile proliferation. And since both you and we are attempting to engage China in a more extensive trade relationship, I hope together we can have a positive influence against that development.

The Pacific nations simply must develop new ways to combat the spread of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technologies. And in the coming weeks, the U.S. will propose new efforts aimed at that goal. But no specter hangs over this peninsula or this region more darkly than the danger of nuclear proliferation. Nearly 160 nations have now joined to resist that threat thr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the most universally supported treaty in all history.

Now, for the first time since that treaty was open for signatures, one of its members has threatened to withdraw. Our goals remain firm. We seek a nonnuclear Korean Peninsula and robust global rules against proliferation. That is why we urge North Korea to reaffirm its

commitment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o fulfill its full scope safeguards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cluding IAEA inspections of undeclared nuclear sites, and to implement bilateral inspections under the South-North Nuclear Accord.(Applause.)

Our goal is not endless discussions, but certifiable compliance. North Korea must understand our intentions. We are seeking to prevent aggression, not to initiate it. And so long as North Korea abides by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it has nothing to fear from America.

The U.S. has worked to bring North Korea back within the fold of nuclear responsibility.

But your nation, too, has a critical role to play. The future of this peninsula is for you and North Korea to shape. The South-North Nuclear Accord you negotiated goes even further than existing international accords.

It not only banishes nuclear weapons from the peninsula, it also bans the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that could be used to make those weapons. We urg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path breaking accord which can serve as a model for other regions of nuclear tension.

Even as we address immediate concerns such as proliferation, we must also have a vision of how we will meet the broader challenges of this era. That is what I sought to create during the recently concluded G-7 talks. For example, by proposing new ways to focus on new problems, such as the slow pace of job creation in the G-7 countries. And it is why I have proposed a NATO summit so that we can adapt that institution to new times and new challenges.

In both Asia and Europe the dominant unitary threat of Soviet aggression has disappeared, In both regions, the end of the Cold War has allowed a host of problems to emerge or to reappear, such as ancient ethnic rivalries, regional tensions, flows of refugees and the trafficking of deadly weapons and dangerous drugs.

In Europe these changes require us to adapt an existing security institution NATO. In the Pacific no institution exists. Moreover, since the Asian Pacific face a unitary threat, there is no need for us to create one single alliance. The challenge for the Asian Pacific in this decade, instead, is to develop multiple new arrangements to meet multiple threats and opportunities. These arrangements can function like overlapping plates of armor individually providing protection and together covering the full body of our common security concerns.

Some new arrangements may involve groups of nations confronting immediate problems. This is the model we pursued to addres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Our two nations worked not only with each other but also with Japan and with others who could bring their influence to bear.

Other arrangements may involve peacekeeping, such as the massive and promising U.N. effort to support reconciliation in Cambodia. Still others may pursu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o head off regional or subregional disputes.

We also need new regional security dialogues. This month's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in Singapore, which the United States will attend, offers an immediate opportunity to further such a dialogue. Korea can play a vital role in the region's new arrangements, for it stands at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within two hours by air from Singapore, Tokyo, Beijing and Vladivostok.

The many economic discussions within the region also can play a role. By lowering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we can generate jobs, ease regional tensions and, thus, enhance regional security. That is why I welcome the new 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our two nations are launching on this visit. And that is why I announced in Japan that I would like to host an informal economic conference among APEC's leaders following the ministerial meeting in Seattle, Washington, this fall.

The goal of all these efforts is to integrate, not isolate the region's powers. China is a key example. We believe China cannot be a full partner in the world community until it respect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rade and weapon sales. But we also are prepared to involve China in building this region's new security and economic architectures. We need an involved and engaged China, not an isolated China.

Some in the U.S. have been reluctant to enter into regional security dialogues in Asia. They fear it would seem a pretext for American withdrawal from the area. But I see this as a way to supplement our alliances and forward military presence, not to supplant them.

These dialogues can ensure that the end of the Cold War does not provide an opening for regional rivalries, chaos and arms races. They can build a foundation for our shared security well into the 21st century.

Ultimately, the guarantee of our security must rest in the character and the intentions of the region's nations themselves. That is why our final security priority must be to support the spread of democracy throughout the Asian Pacific.

Democracies not only are more likely to meet the needs and respect the rights of their people, they also make better neighbors. They do not wage war on each other, practice terrorism, generate refugees or traffick in drugs and outlaw weapons. They make more reliable partners in trade and in the kind of dialogues we announced today.

Today, some argu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somehow unsuited to parts of Asia, or that they mask some cultural imperialism on the part of the West. My ear is drawn instead to more compelling voices: the Cai Ling, who proclaimed democracy's spirit at Tiananmen Square ; to Aung San Suukyi whose eloquent opposition to repression in Burma has stirred the entire world ; to Boris Yeltsin who is leading Russia toward becoming a great democratic power on the Pacific ; and to your own President Kim and others in this multi-party assembly who have helped democracy flower here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You are truly an example to people all over the Asian Pacific region because you have had the courage to confront the issues of political reform and economic reform ; to ask the hard

questions of yourselves ; to have the public debates necessary when people honestly seek to improve and open their society and move forward. And I salute you on behalf of freedom ; loving people everywhere in the world.(Applause)

To be sure, every nation must retain its own culture, and we will all struggle about what it means to define that. But Korea proves that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not western imports. They flow from the internal spirit of human beings because they reflect universal aspirations.

Now we must respond to those aspirations throughout this region. We must support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seek to strengthen Asia's building blocks of civic society, such as open elections, trade unions, and a free press. And we must deploy accurate news and information against Asia's closed societies. I have proposed creation an Asian Democracy Radio for this purpose, and I look forward to its establishment in the near future.

Two hundred seventeen years ago, America's founders declared the rights of self government to be God given, and therefore inalienable. Today, here on Asian soil, let us together reaffirm that declaration - not only as an article of faith, but as a sturdy building block in our region's shared security.

This, then, is our nations vision for security in the new Pacific community : a continued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new efforts to combat proliferation, new regional security dialogues, and vigorous support for democracies and democratic movements. These elements of security can help create a Pacific region where economic competition is vigorous, but peaceful ; where diverse nations work as partners to improve their shared security ; where democracy, as well as balanced military strength, takes its place as a guardian of our security.

We will not realize every aspect of that vision overnight, nor will the new Pacific community come to pass without great effort. But neither of our nations is a stranger to hard work.

We will not realize every aspect of that vision overnight, nor will the new Pacific community come to pass without great effort. But neither of our nations is a stranger to hard work.

I think, in particular, of the image of your great long-distance runner, Hwang Yung Cho, who endured that final steep hill in Barcelona to capture the gold in the marathon in the 1992 Olympics. His energy and perseverance captured th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who have not only endured, but prospered through a long, hard, and challenging history. We respect that spirit. We honor your values. We have stood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in days past, and so it shall be in the days ahead. The Struggle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opportunity is, indeed, a marathon. Let Us run the race together.

Thank you very much.(Applause.)